

02

시정권고 사례를 통해 본 언론의 자살보도

김정민 언론중재위원회 경남사무소장,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수료



1. 들어가며

모든 인간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질병, 노화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마주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수많은 죽음 가운데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는 사례는 극소수다. 부고 기사를 제외한다면 미디어를 통해 접하게 되는 죽음은 대개 불의의 사고, 타인에 의한 살해처럼 매우 드물고 예기치 못하게 생명을 잃은 경우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언론보도를 통해 자주 전해지는 또 다른 죽음의 유형 중 하나가 바로 ‘자살’이다.

2017년 미국에서 저널리스트 50명을 대상으로 자살을 보도하거나 보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심층 인터뷰한 결과¹⁾에 따르면 언론인들은 자살을 교통사고나 화재 사건과 같이 예외적인 사건·사고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저널리스트들이 살인이나 자동차 사고, 토네이도나 폭발로 인한 죽음을 취재하는 데에는 주저하지 않는 것과 달리, 자살 사건은 언론사의 내부 가이드라인, 기사가 미칠 영향력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취재·보도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2004년 <자살보도 윤리강령>²⁾ 제정 후, 자살보도가 또 다른 자살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언론계의 관심과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여전히 자살 관련 보도에 대한 우려는 잦아들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23년 10월 31일 발표한 ‘자살 관련 보도 인식조사’ 결과³⁾를 보면 응답자의 60.3%가 언론의 자살보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국내 언론의 자살보도는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일까? 언론중재위원회의 자살보도 관련 시정권고 사례를 통해 자살보도 현황과 개선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자살보도와 시정권고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제32조에 따라 언론보도의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 침해 사항을

1) Beam, R. A., John, S. L. & Yaqub, M. M. (2018). "We Don't Cover Suicide... (Except When We Do Cover Suicide)" A case study in the production of news. <Journalism Studies>, 19(10), pp.1447-1465.

2) 2004년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자살예방협회가 공동으로 제정하였고, 이 내용을 재정비해 2013년 한국기자협회,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가 <자살보도 권고기준 2.0>을 발표했다. 현재는 2018년 발표된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이 적용되고 있다. (참조: 한국기자협회. URL: <https://journalist.or.kr/>)

3) 한국언론진흥재단 (2023. 10. 31). 자살 관련 보도에 대한 인식 조사. <미디어 이슈>.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심의해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하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절차가 언론보도로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시정권고는 법익 침해의 우려가 있는 보도가 반복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⁴⁾ 이러한 측면에서 자살보도에 관한 시정권고는 자살자 및 유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베르테르 효과’로 알려져 있는 모방 자살(copycat suicide) 예방 등을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시정권고 대상이 되는 법익 침해의 내용은 시정권고 심의기준에 담겨 있는데, 자살보도 관련 시정권고 심의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14조(자살 보도)

- ① 언론은 자살 보도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
 2. 자살 장소 및 자살 방법,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 등의 묘사
 3. 자살에 사용된 약명 또는 치사량
- ② 언론은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자살 동기를 판단하는 보도를 하거나, 자살 동기를 단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언론은 자살을 영웅시 혹은 미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도록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시정권고 심의기준에 처음 자살보도 관련 규정이 별도로 마련된 것은 1989년⁵⁾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참혹한 자살 방법을 필요 이상으로 공표하는 경우’만을 포함하였다. 1996년 한 차례 심의기준 개정⁶⁾이 있었지만 기존

4) 양재규 (2022). 슬기로운 시정권고 활용법: 언론의 사회적 책임 제고와 시정권고 제도. <언론중재>, 2022년 가을호 (통권164호), pp.35-39.

5) 시정권고 심의기준 (1989. 10. 5. 개정)

3.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침해

(4) 자살 또는 타살에 사용된 약명과 치사량을 공표하였을 경우

6) 1996. 12. 13. 개정

의 내용에 ‘자살에 사용된 약명과 치사량을 언급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정도였다.

자살보도에 대한 심의기준이 현재와 같이 구체화된 것은 2004년이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여타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에 속했던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000년대에 들어서며 급증하기 시작했고 2003년부터는 OECD 국가 중 1, 2위를 다툰 정도가 되었다.⁷⁾ 자살률 증가는 고령화 시대에 진입하며 더욱 심각한 사회 문제로 여겨지기 시작했고, 2004년 정부는 5년 단위의 자살예방 기본대책을 마련했다. 이후 한국자살예방협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언론의 <자살보도 윤리강령>을 공동 발표하면서 미디어가 자살을 다룰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가이드라인이 처음으로 마련되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자살보도에서 개인적·사회적 법익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과 유형을 선별해 시정권고 심의기준에 반영했다.⁸⁾

시정권고 심의기준에서 가급적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자살보도의 유형은 크게 5가지다. 첫째 자살자(자살미수자, 자살로 추정되는 자 포함) 및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는 경우, 둘째 자살 장소나 방법, 자살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자세히 묘사하는 경우, 셋째 자살에 사용된 약명과 치사량을 공개하는 경우, 넷째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자살동기를 판단하거나 단정하는 경우, 다섯째 자살을 영웅시 혹은 미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도록 하는 경우다. 첫 번째 유형이 자살자 및 유가족의 명예감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나머지 유형들은 자살을 염두에 두고 있을지 모르는 불특정 다수를 위한 예방적 조치라 할 수 있다.

이후 자살보도 관련 시정권고 심의기준은 두 차례 추가 개정되었는데 2005년 자살자의 범주에 ‘자살미수자’를 포함⁹⁾하고, 2008년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의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¹⁰⁾이었다.

7) 안혜민 (2023. 4. 27). [스프] 미디어는 자살률을 증가시켰을까? [마부뉴스] 데이터로 보는 대한민국의 자살. <스브스뉴스>. URL: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170279&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8) 언론중재위원회 (2012). <언론중재위원회 30년사>, p.240.

9) 2005. 7. 22.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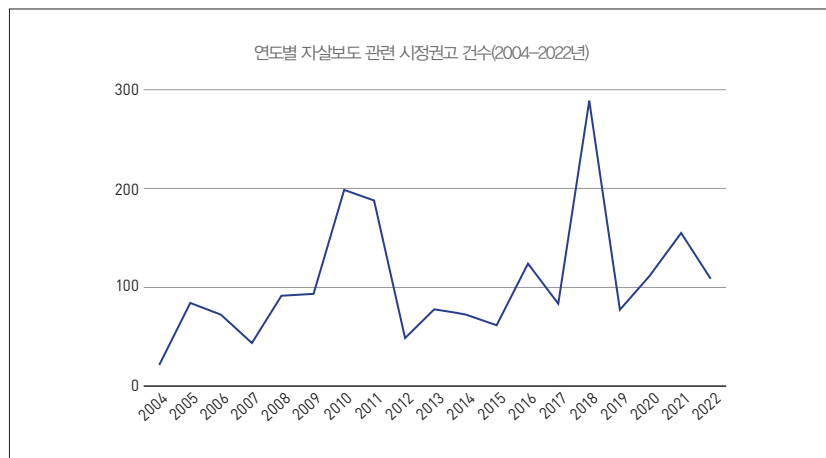
10) 2008. 3. 18. 개정

3. 자살보도 관련 시정권고 건수 변화

언론중재위원회가 설립된 1981년 이후부터 2023년 10월까지 자살보도 관련 시정권고 결정건수는 모두 2,130건으로 전체 시정권고 건수(16,557건)의 약 13%를 차지한다.¹¹⁾ 이 가운데 1996년 4건, 1998년 1건을 제외하면 모두 2004년 이후의 보도들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199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의 자살률이 높지 않았고 시정권고 심의기준 역시 자살방법이나 자살에 사용된 약물명 등을 지나치게 상세히 언급하는 경우만을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04년 이후에도 두 자릿수를 넘지 않았던 시정권고 건수는 2010년 199건, 2011년 189건으로 급증했다. 이후로는 줄곧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18년 287건으로 자살보도와 관련해 역대 가장 많은 시정권고 결정이 있었다(〈그림 1〉 참조).

〈그림 1〉 연도별 자살보도 관련 시정권고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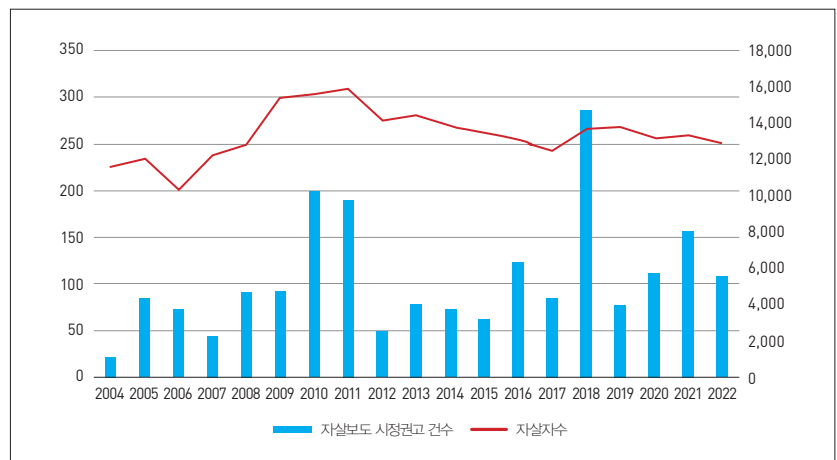
자살은 다양한 개인적·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기 때문에 시정권고 결정의 증가 또는 감소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규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시정권고 결정이 유독 많았던 시기에 나타난 몇 가

11) 2005년 언론중재법 제정 시 피해자 및 제3자가 시정권고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심의 제도'가 일시적으로 도입되어 몇 년 간 유지되었다. 그러나 2009년 2월 6일 언론중재법 개정으로 제3자 신청심의 제도 관련 조항이 삭제되면서 이후로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자체심의에 따른 시정권고만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 언급한 시정권고 건수는 모두 자체심의를 대상으로 한다. 연도별 시정권고 건수 등의 수치는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시정권고 의결현황 및 매년 발행하는 〈시정권고사례집〉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였다.

지 특징적 변화를 통해 자살보도 시정권고 건수 증감에 미친 요인을 추정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살률의 변화다. 연도별 자살보도 관련 시정권고 건수와 국내 자살자수를 비교해보면 그 증감이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자살률이 급격히 높아진 시기에 시정권고 결정건수도 함께 늘어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그림 2〉 참조). 예컨대 시정권고 결정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던 2010년과 2011년은 우리나라 자살률이 각각 31.2명, 31.7명으로 현재까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던 해이며, 가장 많은 시정권고가 내려졌던 2018년의 경우도 자살자수가 전년도에 비해 1천 명 이상 증가한 때였다.

〈그림 2〉 연도별 자살보도 시정권고 건수와 자살자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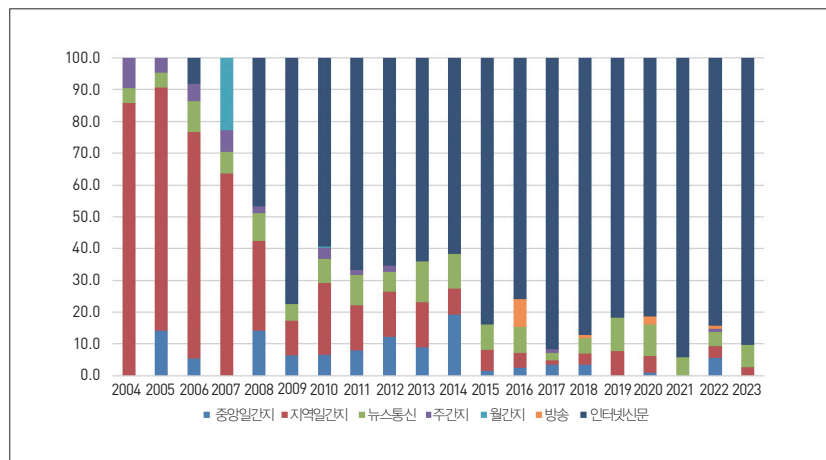
한편, 자살 관련 시정권고 건수가 많았던 시기는 사회적으로 잘 알려진 유명인들의 자살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던 때이기도 하다. 2010년에는 작가 겸 방송인 최윤희 씨, 2011년에는 배우 최진실, 최진영 씨가 잇따라 사망했고,¹²⁾ 가장 많은 시정권고 결정건수를 기록한 2018년에는 샤이니 종현, 정치인 노회찬 씨가 세상을 떠났다. 특히 샤이니 종현의 죽음과 관련해서는 최초로 사망 추정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한 순간부터 ‘레지던스 프라이팬에서 갈탄 발견’, ‘친누나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 ‘SNS에 의미심장 글’과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속보 경쟁이 이어지면서 총 228건의 관련 보도에 대해 시

12) 김창룡 (2010). 자살보도의 실태와 개선 방안. 〈언론중재위원회 정책심포지엄〉 자료집.

정권고 결정이 내려졌다.¹³⁾

시정권고 결정의 증가는 심의대상 매체 변화에서도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 2007년까지만 해도 자살보도 관련 시정권고 대상매체는 일간지가 대다수였지만 2009년부터는 인터넷신문이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 2015년 무렵부터는 인터넷신문의 비율이 80% 이상에 달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변화는 자살보도뿐만 아니라 전체 시정권고 결정 대상매체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그림 3) 참조). 인터넷신문의 기하급수적 증가로 인한 매체 간 경쟁 심화, 특히 소규모 운영에 따른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저널리즘 교육 기회 부재 등은 시정권고 결정건수의 지속적인 증가 원인으로 지목된다.¹⁴⁾

〈그림 3〉 연도별 자살보도 관련 시정권고 대상 매체 비율



4. 시정권고 사례로 본 자살보도

언론중재위원회가 자살보도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기준을 마련해 시정을 권고한 지 약 20여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국내 자살보도는 어떻게, 무엇이 달라졌을까? 자살보도와 관련한 시정권고 사례들을 크게 세 가지 위반 유형으로 분류한 후 그 변화 양상을 개별사례¹⁵⁾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3) 2018년 1월 시정권고 의결현황 및 언론중재위원회 (2019). 〈2018년 시정권고 사례집〉 참조.

14) 양재규 (2022) 앞의 글, p.41.

15) 시정권고 심의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연도별 〈시정권고 사례집〉 및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 〈시정권고〉 자료실에 게시되는 월별 시정권고소위원회 결과 자료 및 언론중재위원회가 발행한 각종 간행물 수록 자료 등을 참조하였다.

1) 자살자 신원 공개

자살보도와 관련해 가장 많은 시정권고 결정이 내려진 위반유형은 자살자(자살미수자, 자살로 추정되는 자 포함)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공개해 자살자 및 유족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다. 구체적으로는 자살자의 성, 나이뿐만 아니라 직장명, 직책이나 직급, 과거 이력 등 자살자 또는 유족이 누구인지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상세히 공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자살자 신원공개 기준 위반 사례는 특히 시정권고 대상매체 중 지면신문의 비중이 높았던 2009년 이전의 보도들에서 다수 발견되었다. 당시 대부분의 자살 사건이 주로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사고 기사의 일부로 다뤄졌기 때문인데, 형사사건을 비롯해 일반적인 사건·사고 보도에서 익명보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탓에 아래 사례와 같이 당사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지 등 자살자의 사적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가 잦았다.

「지난 17일 오전 6시경 거제시 사등면 가조도 ○○리 ○○○번지에 거주하는 김모(60세)씨가 - (중략) - 자살했다. 인근 주민들에 의하면 김씨는 신병을 비판해 자살한 것으로 보이나 경찰은 사망원인을 조사 중이다.」¹⁶⁾

사건·사고 기사에서 익명보도 원칙이 일반화되고, 개인의 사생활 등 인격권 보호에 대한 사회 인식이 높아지면서 공적 인물이 아닌 일반인의 신상이 언론보도에 언급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인터넷신문 등에서 자살자에 대한 사적 정보를 여과 없이 보도하는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사들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법익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유의가 필요하다. 한 예로 2015년 모 인터넷신문은 자살로 추정되는 일가족 변사 사건을 보도하면서 경찰 내부 수사 자료로 추정되는 문건을 사진으로 촬영해 그대로

¹⁶⁾ 2005자심247 결정. 원 보도에는 상세 주소지가 모두 공개되었으나 인격권 보호를 위해 익명 처리하였다. 이후 사례에서도 필요한 경우 기사 일부를 가림 처리하였다.

게재했는데, 해당 자료에는 자살자 가족의 성명과 나이는 물론 주민등록번호, 자살자의 유서 전문 등이 담겨 있었다.¹⁷⁾ 이러한 사적 정보들이 인터넷 공간에 머물며 고인은 물론 유가족들에게 큰 상처와 피해를 남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자살자 신원공개는 시정권고 대상에서 제외하기 어려운 위반유형이다.

한편, 인터넷신문에 대한 시정권고 비중이 커진 2009년 이후의 시정권고 결정 사례 들은 유명 연예인 또는 연예인 주변 인물과 관련된 경우가 많았다. 특히 당사자가 공적 인물이 아님에도 유명인과 가까운 관계라는 이유로 사적 정보들을 과도하게 보도한 경우가 다수였다. 예를 들면 ‘연예인 ○○○의 매니저’¹⁸⁾, ‘드라마 □□ 제작사 대표’¹⁹⁾, ‘탤런트 △△△의 남편’²⁰⁾, ‘○○○ 방송국의 <□□□□> 프로그램 막내 작가’²¹⁾ 등과 같이 잘 알려진 연예인의 이름 등을 제목에 내세워 자살자를 쉽게 특정할 수 있도록 보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유명인 지인의 자살 기사는 수십 개의 인터넷 매체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비슷한 내용을 보도하는 패턴을 반복하기도 했는데, 이는 인기검색어를 이용해 클릭을 유발하는 연예 저널리즘의 경쟁적 보도 행태와 깊은 관련이 있어 보인다.²²⁾

최근 들어서는 방송 프로그램 출연이나 유튜브(YouTube) 활동 등을 활발히 하며 인지도를 얻게 된 일반인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으로 알려진 일반인의 사생활을 연예인과 같이 보도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단지 미디어에 노출된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공적 인물처럼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자살보도의 경우, 고인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2021년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일반인의 자살 소식을 전하며 성명, 나이, 근무처, 직장, 직위, 직급, 근무부서 등의 신상정보를 언급한 경우를 들 수 있는데, 몇몇 매체들은 당사자의 인스타그램(Instagram) 계정 및 게시물로 올렸던 사진까지 캡처해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언론

17) 언론중재위원회 (2016). <2015년도 조정중재·시정권고 사례집>, pp.288~290(제2015-206호).

18) ————— (2011). <2010년도 조정중재·시정권고 사례집>, pp.448~450(제2010-9~43호).

19) ————— (2011). <2010년도 조정중재·시정권고 사례집>, pp.468~469(제2010-151~169호).

20) ————— (2010). <2009년도 조정중재·시정권고 사례집>, pp.1052,1054~1055(2009자삼158~161, 169~201호).

21) ————— (2009). <2008년도 조정중재·시정권고 사례집>, pp.956~957(2008자삼154~184호).

22) 남재일 (2013). 연예저널리즘,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언론중재>, 2013년 여름호(통권127호), pp.76~87.

중재위원회는 단 한차례 방송에 출연했을 뿐인 일반인의 신상을 지나치게 자세히 보도한 것은 자살자 신원 공개 관련 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을 권고했다.²³⁾

2) 자살 장소 및 방법 등 상세 묘사

『(전략) 경찰 관계자는 “중현이 발견된 레지던스에 있는 ○○○○에 ○○이 타고 있었다. 연기를 들이마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석탄의 한 종류인 ○○은 건설현장 등에서 난방용으로 많이 쓰인다. 종종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다 질식사고가 난다. (이하 생략)』²⁴⁾

『(전략) 숨진 A씨는 키 185cm, 몸무게 116kg의 건장한 체격으로 지병도 없었다. 부검 결과사인(死因)이 될 만한 내상이나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의 사망 원인을 추정해볼 수 있는 단서는 위장과 혈액, 간 등에서 검출된 ○○○ 성분. A씨의 혈중 ○○○ 농도는 L당 ○○mg에 달했다. 혈중 ○○○ 농도가 L당 ○○mg 이하 일 때 안전한 수준이고 ○○mg 이상이면 치사량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A씨는 치사량의 ○배 가까운 ○○○에 중독됐던 셈이다. A씨의 시신 근처에서 발견된 작은 갈색 유리병과 컵에서도 국과수 감식 결과 ○○○ 성분이 검출됐다. A씨가 죽기 한 달 전 친구들에게 “해외에서 산 약이 있는데 사람을 아주 빨리 죽일 수 있다”고 말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하 생략)』²⁵⁾

위 사례들은 자살 방법이나 자살에 사용된 약물명, 치사량 등을 상세히 보도해 시정권고 결정이 내려진 경우다. 시정권고 심의기준과 자살보도 권고 기준 등에서 자살 장소와 방법 등의 공개를 금지하는 까닭은 자살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살을 부추기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0년 모 대기업 직원의 자살 사건을 보도하며 투신한 건물 전

23) 언론중재위원회 (2022). <2021년도 시정권고 사례집>, pp.54-55(제2021-295호).

24) ————— (2019). <2018년도 시정권고 사례집>, p.63(제2018-22호).

25) ————— (2016). <2015년도 조정중재·시정권고 사례집>, p.291(제2015-227호).

경 및 주변 사진들을 게재한 사례²⁶⁾, 2021년 성전환 수술로 강제전역 조치된 모 하사의 자살 사건과 관련해 자택 내부 사진을 촬영해 보도한 사례²⁷⁾, 2022년 수원 세 모녀 자살 사건을 다루면서 자택 내부 모습을 공개한 사례²⁸⁾ 등과 같이 자살 장소 등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전하는 경우들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충격을 안겼던 사례는 올해 봄, 한 10대 청소년이 서울 강남의 고층건물에서 자신이 추락하는 모습을 인스타그램으로 생중계한 일일 것이다. 당시 촬영된 영상은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었는데, 그 전파 경로 가운데에는 일부 인터넷 언론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 매체는 생중계 영상 중에서도 자극적인 부분만을 캡처해 기사화하였고, 언론중재위원회는 총 19건의 보도에 대해 시정권고를 결정했다.²⁹⁾

3) 자살 동기 단정 보도

자살은 여러 개인적·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그럼에도 특정 사안을 자살 동기로 단정해 제목에 강조하는 방식의 보도들은 오랜 시간 반복되고 있다.

2022년 7월 전남 완도 인근 바다에 빠져 숨진 일가족 사건의 경우, 실종 당시부터 사망 사실이 확인되기까지의 과정에서 다량의 기사들이 쏟아졌다. 그리고 상당수의 기사는 코인 투자 실패를 자살 동기로 단정하거나 블랙박스에 담긴 가족들의 대화를 언급하며 자살 실행 과정을 상세히 묘사하는 등 자살보도 기준과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이처럼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가 이어지자 한국자살예방협회가 나서 호기심만을 자극하는 선정적인 콘텐츠 양산을 지적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³⁰⁾ 언론중재위원회 역시 해당 가족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거나 ‘루나 코인’ 등을

26) ————— (2021). <2020년도 시정권고 사례집>, p.51(제2020-447호).

27) ————— (2022). <2021년도 시정권고 사례집>, p.56(제2021-462호).

28)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 2022년도 제9차 시정권고소위원회 결과(제2022-935호). URL: https://www.pac.or.kr/kor/pages/?p=195&b=B_1_6&bn=2991&m=read&nPage=2&cate=PD03&f=TITLE&s=

29)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 2023년 제4차 시정권고소위원회 결과(제2023-393~411호). URL: https://www.pac.or.kr/kor/pages/?p=218&b=B_1_6&bn=3077&m=read&nPage=1&cate=PD03&f=TITLE&s=

30) 박효순 (2022. 7. 3). 자살예방협회 “자녀살해 후 극단적 선택은 중대 범죄” 성명서. <경향신문>. URL: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207030739001>

언급하며 투자 실패가 자살동기인 것처럼 단정한 보도에 시정권고를 결정했다.³¹⁾

이밖에도 '상사·동료와의 갈등', '성적 비관', '생활고', '우울증', '사업 실패' 등의 사유가 자살에 이른 원인인 것처럼 지목하는 관행은 여전히 개선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특히 유명인의 자살 사건 보도에서 유서 내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경우는 자살을 자신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지양해야 할 보도의 대표 유형에 속한다. 하지만 2020년 한 BJ의 자살 사건³²⁾, 최근 사망한 유튜버 김용호 씨와 학교폭력 피해 폭로자 표예림 씨 관련 보도³³⁾ 등에서 고인이 마지막으로 남긴 영상이나 음성 파일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기사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정한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은 유명인 자살보도에서 권고기준이 더욱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미디어가 비추는 화려하고 밝은 모습만을 마주했던 일반 시민들에게 유명인의 자살은 관심과 파급력 면에서 충격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5. 나가며: 자살보도로 인한 법익 침해 예방 가이드, '시정권고'

「시정권고 심의기준」 외에도 자살보도가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은 다양하다. 자살보도와 관련해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적인 기사 작성 지침을 담고 있는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비롯해 한국신문윤리위원회³⁴⁾,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³⁵⁾ 등 자율규제기

31)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 2022년 제8차 시정권고소위원회 결과(제2022-800~831호). URL: https://www.pac.or.kr/kor/pages/?p=218&b=B_1_6&bn=2972&m=read&nPage=2&cate=PD03&f=TITLE&s=

32)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 2020년 제8차 시정권고소위원회 결과(제2020-501~531호). URL: https://www.pac.or.kr/kor/pages/?p=218&b=B_1_6&bn=2716&m=read&nPage=5&cate=PD03&f=TITLE&s=

33) 언론중재위원회. 2023년 제11차 시정권고소위원회 결과(제2023-915~987호, 제2023-988~1008호). URL: https://www.pac.or.kr/kor/pages/?p=218&b=B_1_6&bn=3144&m=read&nPage=1&cate=PD03&f=TITLE&s=

34)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⑧ (자살보도의 주의) 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한다. 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표제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

35)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13조 (범죄 및 자살보도) ⑥ (자살보도) 자살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자살방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등 대중의 호기심을 유발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한다.

1. 제목에 '자살' 표현을 쓰지 않는다.
2.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
3.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자살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4. 유명인 등의 자살사실에 대해 상세하게 보도하지 않는다.
5. 자살을 미화하거나 정당화하지 않는다.
6.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에는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구의 윤리규정이나 심의기준에도 자살보도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 자율규제의 차원에서 제시하는 자살보도 기준들은 언론인들이 현장에서 기사를 작성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 내용에는 기사 작성의 원칙뿐만 아니라 특정 단어의 배제나 선택 등의 제안도 포함되어 있다. 예컨대, 〈자살보도 권고기준〉은 ‘자살’ 대신 ‘사망’, ‘숨지다’와 같은 대체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고, ‘동반 자살’은 ‘살해 후 자살’과 같이 범죄로 인식될 수 있게 보도하는 방안 등이 언급된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경우도 자살보도의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자살보도에서 제외해야 할 내용과 포함시키면 좋을 내용들을 ‘자살보도를 위한 실천요강’으로 정리해 권장하고 있다.³⁶⁾

이러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과 비교하면 「시정권고 심의기준」은 자살보도와 관련해 다소 원론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시정권고 제도가 마련된 법적 취지를 고려하면 이는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시정권고의 근거가 되는 언론중재법 제1조는 이 법률의 제정 목적이 ‘언론보도로 인해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해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조화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자살보도 관련 시정권고 심의는 자살자 및 유족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사회 구

36)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홈페이지(URL: http://www.ikpec.or.kr/sub/sub_0106-1.asp) 참조.

성원들이 자살 위험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법익 침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보다 큰 틀에서는 언론이 ‘자살’이라는 사회 현상을 다룰 때 어떻게 하면 국민의 알권리와 인격권 보호라는 가치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대신한다고도 볼 수 있다. 실제로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 제4항은 ‘제1항 제1호(자살자 신원공개) 및 제2호(자살장소, 방법, 경위 묘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공공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 되는 사건인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는데, 이 기준에 따라 전직 대통령이나 정치인, 고위 공직자, 유명 연예인 등과 같이 공적 인물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인물의 죽음에 관한 사안은 공공의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정권고 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례들도 있다.³⁷⁾ 이처럼 시정권고는 〈자살보도 권고기준〉 등 자율적인 규제 장치들을 보완하는 한편, 자살보도의 의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기준점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겠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가족, 친구 등 평소 가깝게 지내던 지인을 자살로 잃은 사람들을, 전지기 힘든 상황에서 살아남았다는 뜻으로 ‘자살 생존자’라 부른다.³⁸⁾ 이는 자살이 비단 한 생명을 잃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자살 사건 가운데는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내거나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기 위해 기록되고 알려져야 하는 경우도 분명 존재할 것이다. 다만 그 기록의 과정에서 지금은 세상에 없는 누군가가 존엄성을 가진 인격체였음을 상기시키는 수단으로 시정권고 사례들이 적극 활용되었으면 한다. 

37) 김창룡 (2010) 앞의 글

38) 김금희 (2023. 9. 12). [동아광장] 우리는 자살 생존자로 남아 있다. <동아일보>. URL: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30912/121150866/1>